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204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138,539,970원(=취득세 127,698,770원 + 농어촌특별세 10,841,200원)(각 가산세 포함)¹⁾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37,851,440원(=취득세 127,072,830원 + 농어촌특별세 10,778,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오류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금액을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6. 7. 2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3,000주 중 13,2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1. 9. 26. C(이하 '소외인'이라 함)이 보유하던 주식 9,900주를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 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총 발행 주식의 70%(23,10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3. 6. 12.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94,839,6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32,233,150원(합계 127,072,83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9,483,9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294,650원(합계 10,778,610원) 등 총 137,851,44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 예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23. 7. 12. ○○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8. 25.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31.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94,839,6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32,859,090원(합계 127,698,77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9,483,9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402,240원(합계 10,841,200원) 등 총 138,539,9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3. 11. 29. ○○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24. 1.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4.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2024.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소외인은 2016. 9.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있었고, 원고가 2021. 9. 2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변동일 뿐 이로 인해 원고가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시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소외인은 2016. 9. 5.부터 2017. 2. 12.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것은 인정되나, 2017. 2. 13.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2017. 2.경 이후로는 두 사람이 줄곧 생계를 같이 하며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간	원고	소외인
2016. 9. 5. ~ 2017. 2. 12.	○○시 D, E호	
2017. 2. 13. ~ 2018. 6. 19.	○○ ○○구 F	○○시 D, E호 ○○ ○○구 H, I호 ○○ ○○구 J, K호
2018. 6. 20. ~ 2020. 2. 20.	○○ ○○구 G	
2020. 2. 21. ~ 2020. 9. 13.		
2020. 9. 14. ~ 현재		

(2) 원고가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내역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에서 소외인을 원고와 특수관계(01) 있는 자로 신고하지 않고 타인에 해당하는 기타(09)로 신고하였는바,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의 이동을 특수관계인 간 내부 지분변동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주 성명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2016년(설립시)		2017년(증자)		2019년		2020년		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 고	00 본인							13,200	40%	23,100	70%
소외인	09 기타	900	30%			9,900	30%	9,900	30%	-	-
L	09 기타	1,200	40%								
M	09 기타	900	30%	9,900	30%	9,900	30%	9,900	30%	9,900	30%
N	09 기타			6,600	20%						
O	09 기타			9,900	30%						
P	09 기타			6,600	20%	6,600	20%				
Q	09 기타					6,600	20%				
계		3,000	100%	33,000	100%	33,000	100%	33,000	100%	33,000	100%

(3) 원고는 소외인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을 볼 때 소외인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소외인도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전처 사이의 아들의 결혼식에 혼주 자격으로 참석하고, 기념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9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천○○

판사 강○○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천○○

판사 우○○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 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끝-